

# 충청북도광산지역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1. 12. 30

내 무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정기회

○ 제6차 내무위원회(1991. 12. 27)상정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유의재)

가. 제안이유

○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연장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, 등록세 면제

— 대상 : 광산근로자용 사택, 목욕탕, 독서실, 회관, 공동변소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민귀식)

- 이 조례는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광산근로자용 사택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광산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